



투자협정 바로알기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협정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잡고, 투자협정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투자협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필자 : 동국대학교 김관호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성봉 부연구위원

차례

I .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	5
II . 투자협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인식	11
1. 투자협정은 새로운 국제규범인가	13
2. 투자협정은 시장개방압력의 도구인가	15
3. 투자협정은 불평등 협정인가	18
4.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장전인가	20
5. 투자협정은 반환정적인가	22
6. 투자협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25
7. 투자협정은 역차별적인가	27
8. 투자협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가	28
9. 양자간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보다 더 강력한가	30
10. 투자협정으로 국내부품조달의무 부여가 불가능한가	32
11. 투자협정으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없는가	34
12.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가	36
13. 투자협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38
14. 투자협정은 주권을 침해하는가	40
15. WTO 투자협정 논의는 MAI의 후속인가	42
III . 투자협정과 한국경제	45

I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



투자협정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그리고 두 개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양자간투자협정, 다수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다자간투자협정이라 한다. 또한 지역경제 통합체에 속하는 국가들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하며, 이는 지역투자협정 또는 복수국가간 투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다자간투자협정이라 부를 만한 투자협정은 아직 없으며, 지역투자협정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투자협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양자간투자협정은 가장 대표적인 투자협정의 형태로 전세계에 현재 1,800여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체결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60여개국과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양자간투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 보호에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즉, 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투자유치국의 정치·경제상황에 따른, 이른바 국별위험(country risk) 요소까지도 수반된다.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수용 또는 국유화, 현지국내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손실,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 요소 역시 투자자가 해외투자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사업상의 위험이야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지만, 비상업적 위험은 일국의 조치(현지국의 보호조치 또는 투자국의 보장조치), 또는 양국간의 공동보장 등에 의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양자

간투자협정은 계약당사국들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만을 고려하는 양자간투자협정을 우리는 흔히 투자 보장협정이라고도 지칭한다.

한편 양자간투자협정의 보다 발전된 모습은 비단 외국인투자자의 재산 보호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투자교류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체결하는 양자간투자협정은 대표적으로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고,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자간투자협정을 우리는 흔히 미국형 투자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미국형 양자간투자협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의 원칙이다. 비단 투자자의 재산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현지국에의 진출과 영업 활동 등 제반 사항에서 현지국의 투자자와 차별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양자간투자협정은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와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 이때 투자국의 입장에서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현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반면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이 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있다. 즉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양자간투자협정은 흔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수단과 목표를 연결하는 고리는 바로 자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 신뢰도의 제고라 할 수 있다.

투자자는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 현지국의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투자환

1) 물론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갖고 있는 국가들간에도 체결된다.

경을 희망한다. 이러한 투자자의 바람에 대해 투자유치국은 국제협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양자간투자협정의 존재 여부가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전망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한 양자간투자협정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투자를 유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간투자협정의 존재 여부는 투자자의 투자결정에서 분명히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법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있는 국가에게는 이 협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예측가능하며, 투명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투자협정은 국내의 투자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제도 개선에 있어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

투자협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인식



II. 투자협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인식

1. 투자협정은 새로운 국제규범인가
2. 투자협정은 시장개방압력의 도구인가
3. 투자협정은 불평등 협정인가
4.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장전인가
5. 투자협정은 반환경적인가
6. 투자협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7. 투자협정은 역차별적인가
8. 투자협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가
9. 양자간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보다 더 강력한가
10. 투자협정으로 국내부품조달의무 부여가 불가능한가
11. 투자협정으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없는가
12.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가
13. 투자협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14. 투자협정은 주권을 침해하는가
15. WTO 투자협정 논의는 MAI의 후속인가

1

투자협정은 새로운 국제규범인가

투자협정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규범중 하나이다.

투자협정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따라서 이 협정은 최근의 세계화 진행에 의해 새롭게 출현한 협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협정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국적기업은 세계화의 상징이므로, 이 협정은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들에 의해 최근 주도되는 협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는 더 나아가 이 협정은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낳은 산물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투자협정은 결코 새롭게 출현한 국제규범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간의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미 1990년대 이전에 400여 개의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우리가 흔히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형 양자간투자협정이 시작된 것도 1980년대 중반이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형 양자간투자협정의 모태가 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 출현한 것은 18세기 후반이다. 따라서 투자협정은 결코 새로운 국제규범이 아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 역시 냉전체제 이후 또는 영국의 대처 수상 집권 이후 등장한 것이라면, 투자협정을 세계화, 혹은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독일과 1967년에 양자간 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초로 1990년대 이전에 14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투자협정이 최근까지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투자협정이라는 용어가 일반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다자간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을 추진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에게는 1998년 한미투자협정과 한일투자협정을 추진하면서 이 협정의 존재가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 같다.

투자협정이 새로운 협정이라는 사실은 잘못된 인식이지만, 최근 들어 이 협정의 체결이 확대되고, 이 협정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 들어 천여 개가 넘는 양자간투자협정이 체결되었고, 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양자간투자협정을 종합하는 다자간투자협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들어 세계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체결되고 있는 양자간협정,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협정의 내용이 1990년대 이전의 기존 투자협정의 내용에서 크게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은 많지 않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세계화를 선진국의 이해에 맞도록 하기 위해 이 협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2

투자협정은 시장개방압력의 도구인가

투자협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사유재산의 보호이다.

양자간투자협정은 흔히 미국형투자협정과 유럽형투자협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중 유럽형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자산 보호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으며, 미국형투자협정은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과 관련된 협정은 미국형투자협정 뿐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협정을 하나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협상이 진행된 한미투자협정은 물론 미국형 협정이며, 협상중인 한일투자협정 역시 미국형 협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과 일본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부분을 갖고 전체를 단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우리가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미국에 제안했던 1998년 6월 이전에 이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루고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이 협정을 통한 시장개방 압력은 별로 없다. 흔히 스크린쿼터 철폐를 겨냥하여 미국이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스크린쿼터 그 자체는 투자협정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세계에는 1,800여개가 넘는 양자간투자협정이 있지만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가 체결의 주목적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형이든 유럽형이든 양자간투자협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자국 투자자의 자산을 상대방 국가 내에서 확실하게 보호하는데 있다. 독일이 가장 일찍이 양자간투자협정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양차대전 이후 독일의 투자자들이 많은 대외자산을 잃어버렸던 경험 때문이다.

우리는 투자협정의 3대 핵심 규정으로 수용 및 보상, 자유송금, 그리고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정을 든다. 이는 모두 외국인투자자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수용 및 보상 규정은 공공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국가가 수용 또는 국유화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유송금 규정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자산과 관련된 국내외 송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컨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유송금에 대한 예외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²⁾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전쟁이나 국내소요 등으로 야기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보상시 국내투자자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보호에 관한 핵심 규정은 일반적으로 국내법으로도 보장이 된다. 따라서 국내 법제도가 잘 정비된 선진국의 경우 투자협정의 필요성

2) 이를 투자협정의 세이프가드 규정이라 부른다.

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한 국가, 또는 법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의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국가의 경우, 투자자에게 사유재산의 보호를 국제규범으로 확인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가 우리의 법·제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평가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예로 한 국제적 컨설팅 회사가 주요 다국적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 그들은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우리의 시각이 아닌 외국인투자자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아야 한다.

3

투자협정은 불평등 협정인가

투자협정은 투자유치 측면에서 각국에 동등한 의무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투자협정, 특히 양자간투자협정은 한 국가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협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양자간투자협정은 분명히 양 체약국 모두에 동등한 의무를 부여하는 쌍무협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투자유치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만일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두 국가가 서로간에 투자하는 정도가 비슷하다면 이 협정의 쌍무성은 쉽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자간투자협정은 흔히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와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간에 체결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에 게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간투자협정은 형식적으로는 쌍무적이나 실체는 일방적이다 라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자간투자협정의 경우 협정 체결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투자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최대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의 경우 이 협정을 체결하는 근

본적인 목적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자국의 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이 협정에 의해 이러한 상이한 목적이 모두 달성이 된다면 양국 모두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협정은 상호 호혜적인 협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웬만한 경제발전 수준의 국가인 경우 일방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분명히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투자 역시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 협상시 미국이 비단 투자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이 협정에 대해 접근한 것은 이러한 사실 때문이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면 우리 기업 역시 이 협정에 의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장전인가

외국인투자자는 국내법에 의해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의무를 부여받는다.

“투자협정은 오로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투자자의 권리장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투자협정이 외국인투자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투자협정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감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투자협정이 외국인투자자의 의무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투자자가 현지국에서 어떠한 의무로부터도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국의 법규에 의해 설립된 현지국의 기업이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국의 국내법에 의해 똑같은 의무가 부여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국에서의 의무를 굳이 투자협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투자기업은 다국적기업으로서 순수한 국내기업 보다도 더 큰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의 형태는 아니지만 다국적기업의 현지국에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OECD에서 제정한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

국적기업들이 현지국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보의 공개, 환경보호,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 기술 이전 노력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문자 그대로 권고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다. 그러나 순수한 국내기업과 달리 전 지구촌의 시민들로부터 주시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에게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상징처럼 불리는 맥도널드社가 조그만 일탈적 행동에 의해 전지구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사회적 평판에 더욱 민감하고, 본국, 현지국 여하를 떠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이다.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 아니다. 투자협정은 양국 정부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일 뿐이다. 따라서 투자협정이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에 균형 있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투자협정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협정은 정부간 협정이 지 민간과 정부간의 협정이 아니다.

5

투자협정은 반환경적인가

최근의 투자협정은 오히려 친환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 투자협정에 대한 비판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아마 “투자협정이 반환경적이다”라는 주장이 아닌가 한다. 즉 투자협정은 국가간의 투자 교류를 확대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공해도피처(Pollution Haven) 가설’ 내지는 ‘밑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Bottom)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공해도피처의 가설이란 다국적기업들이 환경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에 투자한다는 가설이다. 그리고 밑바닥을 향한 경쟁 가설이란 각국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자국의 환경규제 수준을 경쟁적으로 낮춘다는 가설이다.

이 두 가지 가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대체로 제시하고 있는 결론은 이러한 가설의 일반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비용의 차이가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환경비용은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각국의

환경규제 수준과 외국인투자 유치간에 유의한 결과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도리어 해외투자도 인력의 이동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규제 수준이 높고 환경이 좋은 지역이나 국가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목적 때문에 자국의 환경규제를 낮춘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설이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정되는 투자협정들에서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NAFTA의 투자협정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국내환경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에서 추진하였던 MAI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도입하려 했다.

한편, 투자협정으로 인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펴나가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현지국의 환경관련 규제로 손해를 본 외국인투자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NAFTA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가 현지국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로 인한 손실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³⁾ 그리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 환경론자들은 외국인투자자가 현지국의 환경주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투자협정에는 협정의 위반 사항에 대해 투자자가 현지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다. 물론 현지국의 행

3) 김관호·이성미, 『최근 국제투자분쟁사례의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35면 이하.

정 및 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국내 구제 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국제중재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구제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해도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국제중재 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자 대 현지국 정부간의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협정 위반 사항이며 환경규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규제도 그것이 협정의 위반 사항이 되면 당연히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NAFTA의 환경관련 규제 분쟁도 이 규제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동등하게 적용되었다면 외국인투자자도 이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캐나다 정부가 이 규제의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중재의 판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 준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보호는 당연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규제에 의해 국내외 투자자의 재산권이 차별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6

투자협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외국인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국내노동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투자협정과 노동권간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환경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 즉, 투자협정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투자를 촉진하며, 이로 인해 투자유치국의 노동자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목적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국가간에 외국인투자유치 경쟁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이른바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노동권의 보호 정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실증적인 연구가 있다. 환경과 마찬가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결론은 노동권의 보호와 외국인투자 유치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국의 노동권 보호 수준을 약화시킨 사례는 극히 발견하기 어렵다.

현재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70% 이상은 선진국들에 의해 유치되고 있고, 이들 국가는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에게 현지국의 열악한 노동권 보호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나라에는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도 있다.

현지국에서의 원만한 노사관계는 순수한 국내기업 보다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더욱 중요한 성패의 열쇠가 된다.

일부 후진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내 일부 노사관련 법규의 예외적 적용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노동분규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노동권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킨 사례는 아니다. 국내 투자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외국기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적으로 국내기업과 다른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국내 노동관련 법규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 때문에 국내 노동 법규를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나라도 없다. 혹시 국내 노동법규를 이런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이는 외국인투자 때문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 나라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일 것이다.

지난 OECD MAI 협상시에 새롭게 논의된 사항중의 하나가 노동관련 문제였다. 즉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 때문에 혹시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나라가 생기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려 했다.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MAI가 체결되었다면 혹시나 하는 우려는 없어졌을 것이다. 아마 앞으로 다자간투자협정이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경우 이 문제가 또다시 검토될 것이다. 이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다.

7

투자협정은 역차별적인가

투자협정의 기본적 취지는 내국민대우이다.

투자협정에서 금지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를 우대하는 국내조치는 투자협정의 위반 사항이 아니다.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투자인센티브는 이 협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혹자는 투자협정이 외국인투자자를 국내투자자 보다 우대하는 역차별적 협정이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투자협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를 우대하라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어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면 이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규 때문이지 투자협정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문제는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특히 양자간투자협정과 관련하여 논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다자차원에서 최근 인센티브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의 지나친 인센티브 경쟁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앞으로 전개될 다자간투자협정 논의에서 이 문제는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8

투자협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가

예외 없는 규범은 없다.

혹자는 투자협정이 그 어떤 협정보다도 강력하고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협정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제협정은 예외를 인정하며, 투자협정 역시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협정보다도 많은 예외를 갖고 있는 것이 투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여타 협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는 투자협정의 어떤 규정에도 우선하는 예외 사유이다. 그리고 투자협정들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공질서, 동식물의 안전 등도 일반적인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도 한다. 또한 문화적 보호를 예외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예외 사유가 많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협정이 유연하고 좋은 협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것을 다 예외로 인정한다면 굳이 투자협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예외는 극히 적은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일반적 예외가 아니더라도 각 사항별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협정-특히 투자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는 투자협정-에서 각 사항별,

또는 개별 조치별 예외를 우리는 흔히 유보사항 또는 유보조치라 부른다. 이는 협정 내용의 위반 사항이기는 하나 현재 즉각적으로 자유화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일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상대방 국가에 제시하는 유보 리스트에는 우리나라가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조치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투자협정 협상에서 투자자유화 협상이란 이러한 유보 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을 말한다.

유보 리스트에 있는 규제조치들은 일시적 예외조치라 할 수 있다. 물론 규제 철폐 시한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시 자발적으로, 또는 상대방 국가와의 추후 협상과정에서 철폐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조치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투자협정이나, 상대방 국가의 압력에 의해 철폐했다기 보다 우리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자유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수준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투자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유화의 압력을 받는 규제는 이제 별로 없다는 것이다.

9

양자간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보다 더 강력한가

반드시 양자간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보다 더 강력하다고는 할 수 없다.

양자간투자협정은 다자간투자협정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구속하고 더 엄격한 내용을 담는 협정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아마도 한미투자협정에 매우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양자간투자협정이 더 강력하냐 아니면 다자간투자협정이 더 강력하냐 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협정이 양자간이나 다자간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협정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다자간협정이 부재한 가운데 양자간협정과 다자간협정을 비교한다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다자간투자협정이라 부를 만한 투자협정이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지난 1990년대 중반 OECD에서 추진되었던 MAI와 미국형 양자간투자협정을 비교하여 미국형 양자간투자협정이 더 강력하다는 주장이 한때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사실 미국형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는 MAI에서 논의되었던 것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일부 규정이 있기는 하다. 예컨대 자유송금의 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든지, 국내

부품조달 의무와 같은 이행의무 규정에 대해 일시적 예외, 즉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지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규정만을 놓고 미국형 투자협정이 가장 강력한 투자협정 모델이라 주장한다면 이는 큰 오류이다. 미국형 투자협정은 여타 투자협정 보다 오히려 유연한 요소도 많이 담고 있다. 예컨대 현재의 유보조치 이외의 새로운 유보조치를 향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현상동결의 원칙이 미국형 투자협정 모델에는 없다. 이 현상동결의 원칙은 OECD 투자규범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투자협정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협정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잘 알려져 있고, 협정이 체약국의 이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속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다자간협정이 양자간협정 보다 효력상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간협정의 경우 비교적 외교적 성격이, 그리고 다자간협정의 경우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10

투자협정으로 국내부품조달 의무 부여가 불가능한가

국내부품 조달 의무 금지는 WTO의 규범 내용이다.

현존하는 양자간투자협정 중 미국형투자협정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게 현지에서 국내부품조달이나 국내 생산품의 사용의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이행의무 금지규정이라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의무 금지 규정은 투자협정의 새로운 요소가 아니다. 이미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협정에서 국내부품조달 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정은 잘 아는 것처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 출현한 협정이다. 이 협정과 미국형 양자간투자협정의 차이점이 있다면 TRIMs는 제조업에서만 국내부품조달 의무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형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서비스업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꼭 사용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고 싶어도 이런 의무가 있다면 외국기업은 진출 의지가 약해질 것이다. 물론 국내부품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다면 이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국내부품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의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국내부품이 경쟁력이 없는 경우일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국내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면 이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 과거 수입대체 등과 같은 내향적 정책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관련 국내산업을 육성한 성공적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보호가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미국이 값비싼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라고 강제한다면 이 역시 우리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라고 강제한다면 아마 우리 기업은 중국에 진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1

투자협정으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없는가

투자협정을 통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국제규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미투자협정 협상시 가장 쟁점이 된 이슈의 하나는 세이프가드 규정의 문제였다. 투자협정에서 세이프가드 규정이란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나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자유로운 외환거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즉 자유송금 원칙의 예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미국의 협정 모델에서 이러한 세이프가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데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이프가드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이 규정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세이프가드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나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이러한 세이프가드 규정을 발동할 수 있는지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국제수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외환거래나 자본이동의 통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적절한 국제수지 조정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위기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통제를 일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단기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화된 상황에서 이 규정은 최후의 정책적 권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 있고 체결된다해도 이 규정을 인정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시 양국은 이 규정을 OECD에서 논의되었던 MAI 수준의 내용을 도입하는 것으로 대략 타협한 바 있다. MAI 수준의 내용이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되 이의 발동, 집행 등을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MAI 협상시 29개 OECD 회원국이 타협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논의되거나 체결되는 투자협정에서도 세이프가드 규정은 MAI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즉 세이프가드 규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규정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의 발동은 더욱 엄격히 제한될 것이다.

느슨한 세이프가드 규정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외국과의 교류가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 규정을 발동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선택일 것이다. 이 규정을 발동하는 경우 상당기간 동안 외국인의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즉,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의 발동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우리가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투자한 개도국에서 발동할 가능성이 큰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향후 개도국이 참여하는 다자간투자협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경우 우리는 수세적 입장보다는 오히려 공격적 입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12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가

스크린쿼터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한미투자협정에서 가장 큰 쟁점 이슈가 된 것으로 일반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제도는 한미투자협정 협상에서 쟁점이 된 여러 이슈중 하나일 뿐이며,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의 압력으로 추진되었다는 일반적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스크린쿼터 제도가 한미투자협정에서 문제시 된 것은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 내용에 투자유치국 정부는 상대방 국가의 투자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용하라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이행의무금지규정 때문이다. 스크린쿼터는 영화관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된 영화를 상영하라는 의무이며, 따라서 이 규정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제도 그 자체는 이 규정의 위배사항이 아니다. 즉, 이행의무 금지 규정은 상대방 국가의 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순수한 국내기업, 즉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은 국내 영화관에 스크린쿼터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미국인이 투자한 영화관에 대해서만 스크린쿼터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것이 무슨

차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미국의 협정모델에서는 상대방 국가 정부가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쿼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단지 이 제도를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화관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외국인이 투자하고 소유한 기업도 분명히 국내기업이다. 따라서 국내의 법·제도를 순수한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따라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은 다국적기업으로서 순수한 국내기업과 성격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수한 국내기업과 모든 측면에서 동등하게 취급하면 이는 다국적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부품 조달 의무와 같은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품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장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내부품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다국적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 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이행의무 부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의무가 특히 부담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린쿼터가 국내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제도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와 같은 국내 부품 사용의무를 적어도 다국적기업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13

투자협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투자협정은 공기업 민영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혹자는 투자협정, 특히 한미투자협정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어떤 투자협정도 공기업을 민영화하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가장 발전된 형태의 투자협정이라 흔히 지칭하는 OECD에서 추진된 MAI나 미국형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단지 이러한 투자협정에서 공기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내국민대우의 의무를 규정할 뿐이다. 우리 정부가 국내 공기업을 민영화하든 안 하든 그것은 투자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기업에 동등한 참여 기회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논의 문제이다. 공기업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 즉 공공성을 감안하여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은 더 이상 공공성의 목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공공성의 목적이 민영화 이후에도 충분히 만

죽된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이상 공공성 때문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공성 때문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꼭 배제해야 한다면 우리는 투자협정에서 일시적 예외를 통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4

투자협정은 주권을 침해하는가

모든 국제규범은 주권의 부분적 양보를 전제로 한다.

경제적 주권이란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행위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자국 영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어떤 통제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분명한 주권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협정은 그러한 통제를 제한하므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침해는 비단 투자협정에 제한된 문제는 아니다. 모든 국제협정은 주권을 침해한다. 관세인하협정은 관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조세조약은 과세주권을 침해한다.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협정이 라고 보는 반덤핑협정 역시 반덤핑조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협정은 부분적으로 주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이는 침해한다기 보다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주권의 행사를 부분적으로 양보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유럽국가들이 경제통합체를 추진하는 것은 개개 국가들이 갖고 있는 관련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투자협정에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자가 현지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혹자는 외국인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은 주권 훼손이고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투자협정에 이러한 분쟁해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이다. 협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만일 협정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그 협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단지 투자협정은 이러한 제재를 투자자가 직접 발동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5

WTO 투자협정 논의는 MAI의 후속인가

WTO 투자협정 논의는 MAI의 협상을 이전한 것이 아니다.

현재 WTO에서는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의 하나로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WTO에서의 논의가 1990년대 중반 OECD에서 있었던 다자간투자협정 MAI의 논의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OECD에서는 지난 1996년 가을부터 1998년에 걸쳐 MAI 제정을 위한 협상을 한 바 있다. 이 협상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OECD 회원국의 수준에 맞는 투자협정을 제정함을 목표로 하였다. 이 협정은 OECD 비회원국에도 원하는 국가에게는 개방한다는 원칙을 지향했지만 비회원국, 즉 개도국의 참여를 전제로 한 협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체결되지 못하였고, OECD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협상의 종결을 선언했다.

WTO에서 투자협정에 대한 논의는 1996년말 제1차 WTO 각료회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부터 WTO내에 무역-투자 작업반을 가동하였고 지금까지 이 작업반에서 투자협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작업반은 MAI 협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OECD에서 실패한 MAI 협상

을 WTO로 이전하여 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WTO에서 추구하고 있는 투자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투자협정이다. 즉 MAI가 추구했던 수준의 협정이 아니다. 개도국들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한 비교적 유연한 투자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른바 개발친화적인 투자규범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OECD MAI 협상에서 고려된 사항이 아니다. 물론 OECD MAI협상의 경험은 WTO에서의 논의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MAI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새롭게 논의하는 차원이 될 것이다.





투자협정과

한국경제



투자협정이 한국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자협정을 통해서 우리의 제도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외국인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외국인투자자에게 문호를 크게 개방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을 어렵게 했던 각종 규제들도 상당히 개선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기업들의 활발한 국내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단지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일시적 목적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변화된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장기적 목적을 지니는 투자이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환경이라 할 수 있다. 즉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의 제도가 결코 퇴행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자유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는 항상 투자에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제도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신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서 외국인투자를 보아서는 안 된다. 외국인투자자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 본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신뢰도가 부족한 모습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희생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외국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 이들에게 우리의 신뢰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협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부족한 우리의 신뢰도를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협정은 다국적기업의 권리장전도 아니고, 우리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계약서도 아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우리의 투자환경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투자환경이 향후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와 외국인투자자간에 보다 안정된 신뢰관계의 구축이 투자협정이 추구하는 목표인 것이다.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화: 02)3460-1186 FAX: 02)3460-1077
<http://www.kiep.go.kr>

경제개방바로알기 ⑦

투자협정 바로알기

2001년 12월 15일 인쇄

2001년 12월 18일 발행

발행인 이경태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 3460-1178 FAX : 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

투자협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인식

투자협정은 새로운 국제규범인가
투자협정은 시장개방압력의 도구인가
투자협정은 불평등 협정인가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장전인가
투자협정은 빈환경적인가
투자협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투자협정은 억지벌적인가
투자협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가
양자간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보다 더 강력한가
투자협정으로 국내부품조달의무 부여가 불가능한가
투자협정으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없는가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가
투자협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투자협정은 주권을 침해하는가
WTO 투자협정 논의는 MAI의 후속인가

투자협정과 한국경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압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http://www.kiep.go.kr>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

투자협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인식

투자협정은 새로운 국제규범인가
투자협정은 시장개방압력의 도구인가
투자협정은 불평등 협정인가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장전인가
투자협정은 빈환경적인가
투자협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투자협정은 역차별적인가
투자협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가
양자간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보다 더 강력한가
투자협정으로 국내부품조달의무 부여가 불가능한가
투자협정으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없는가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가
투자협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투자협정은 주권을 침해하는가
WTO 투자협정 논의는 MAI의 후속인가

투자협정과 한국경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압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http://www.kiep.go.kr>